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0523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br>보고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 | 2 |

## I .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5. 5. 15.
3. 회부연월일 : 2025. 5.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등<sup>1)</sup>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게 부과하였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호 및 제33조제4호).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br>-----<br>-----. |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13.>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현행                                                                                                                                                                                                                                               | 개정안                                                                                                                                                                                                                                                                                                                                                                                                                        |
|--------------------------------------------------------------------------------------------------------------------------------------------------------------------------------------------------------------------------------------------------|----------------------------------------------------------------------------------------------------------------------------------------------------------------------------------------------------------------------------------------------------------------------------------------------------------------------------------------------------------------------------------------------------------------------------|
| <p>1. (생략)</p> <p>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u>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u>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 <p>1. (현행과 같음)</p> <p>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br/>-----<br/>-----<br/>-----<br/>-----</p> <p>제33조(과태료) -----<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u>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u></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22년 7월부터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운영 중인데, 2025년 5월에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한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sup>2)</sup>.

### < 개선과제 유형(예시)>

(과태료 전환)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한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先 행정제재 - 後 형벌화)

행정제재로도 일차적 개선은 가능하나, 위반행위의 지속·반복에 대한 형벌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벌에 앞서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

(형량 조정)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비례성·형평성 등 원칙에 따라 형량 조정

개정안은 이런 경제형벌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한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2)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1차 과제로 14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2차 과제로 41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3년 5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3차 과제로 22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과제 법률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계인, 시공사, 시행자 등에게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6조제1항3),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1조제2호).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구 분                                                | 위반 사항                                               | 현행                | 개정안                 |
|----------------------------------------------------|-----------------------------------------------------|-------------------|---------------------|
| 제26조제1항<br>(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의무) 위반 |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br>하지 아니하거나<br>거짓으로<br>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 1천만원<br>이하의<br>벌금 | 500만원<br>이하의<br>과태료 |
| 제21조제2항<br>(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협조의무)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br>관계 공무원의<br>출입 또는 조사업무를<br>거부·방해한 자     | 1천만원<br>이하의<br>벌금 | (현행과<br>같음4))       |

####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사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4) 참고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 차이가 있으며,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 유형의 의무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위반행위(예시)<sup>5)</sup>>

1. 신고의무 위반(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등)
2. 장부(서류)의 작성·비치·보존의무 위반
3. 허가증·등록증·면허증 등의 갱신 또는 반납 불이행
4. 허가증·요금표 등 표시물의 게시의무 위반
5. 자료·물건제출, 보고·출석·답변 등의 거부 또는 거짓 이행(☞ 안 제33조제4호)
6.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7.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8. 공공기관, 그 밖의 특수법인 등의 등기 또는 공공의 불이행, 규정·명령·지시 위반
9. 검업·검영 또는 검직 금지의무 위반
10. 조사·측량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사용의 거부·방해
11.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 외의 요금 수수
12. 그 밖에 경미하거나 수시로 과해지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 또는 명령의 위반

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1조제2호).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제26조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고층 건축물(일반건축물 포함)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서류 등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26조제2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행정행위로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 시 관계인 등이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대비·대응체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적 목적과 배치되는 행위로서 행위자의 고의가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5)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809-810면

참고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라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러한 정비·개선의 방향으로 행정형벌로서의 단기자유형과 벌금을 원칙적으로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적합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sup>6)</sup>

### <과태료(행정질서벌)와 벌금(행정형벌)의 비교<sup>7)</sup>>

| 구 분  | 과 태 료                                                                       | 벌 금                                               |
|------|-----------------------------------------------------------------------------|---------------------------------------------------|
| 개 념  | <u>경미한 질서위반행위</u> 에 대한 금전적 제재                                               | <u>범죄인에 대한 형벌</u> 로서 금전적 제재                       |
| 대상행위 |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                                             |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
| 적용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형법」, 「형사소송법」                                     |
| 부과주체 | 1차: 행정청<br>2차: 법원(이의제기 시)                                                   | 법원                                                |
| 불복절차 | 과태료 재판<br>(「비송사건절차법」 준용)                                                    | 형사소송                                              |
| 효 과  | - <u>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기록 미발생</u><br>- 미납 시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 강제징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 | - <u>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기록 발생</u><br>- 미납 시 환형유치, 사회봉사 가능 |

6) “행정형벌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오늘날 미확정인 행정명령위반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형벌이 다른 의무확보수단과 중복 내지 병렬적 수단으로 되어 있고, 현행 각 행정법규에 있어 행정명령위반의 제재방법으로 거의 모두가 형벌을 채택하고 있어서 형벌법규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라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의 수단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비·개선의 방향으로 행정형벌로서의 단기자유형과 벌금을 원칙적으로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이 처벌법규는 절차면에서 만이 아니라 실체면에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적합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결정).

7)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804면.

개정안 제33조제4호의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자료·물건제출, 보고·출석·답변 등의 거부 또는 거짓 이행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소방청에 따르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는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sup>8)</sup>나 제22조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여부<sup>9)</sup>에 관한 현장 점검을 위한 사전 조사·

---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고를 위한 근거 규정인데,

법제처가 제시한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해당 자료나 보고가  
후속적인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현행법이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나 “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제33조제1호 및 제3호<sup>10)</sup>),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  
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  
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  
정 2024. 2. 13.>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  
정 2025. 2. 14.>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현황
7. 긴급구조·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4.>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  
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1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2의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  
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현행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와 유형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규정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 <과태료 금액 지침: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행위 관련>

### 유형 3

### 보고

하급행정기관이 상급행정기관에 대해 또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 유형: ① 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②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 ▷ 고려요소

- (보고내용 및 의무자) 사건 등의 중대성과 인적·물적 피해범위, 보고의무자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설 등을 관리감독할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설정
- (보고·자료제출의 목적) 보고내용이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청이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인지, 확인이나 감독의 목적인지를 고려하여 설정

#### ▷ 상한액 설정예시

| 등급             | 금액범위           | 내 용                                                                                                                                                                                                                                                                                       |
|----------------|----------------|-------------------------------------------------------------------------------------------------------------------------------------------------------------------------------------------------------------------------------------------------------------------------------------------|
| A 등급<br>(상위등급) | 1천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사고, 금융사고, 개인정보 유출, 보험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한 사건·사고로서 사고 시설 등에 대한 법률상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자의 신고의무</li> <li>■ 가스 등 자원수급, 온실가스 배출 등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인 계획이나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의무</li> <li>■ 할부거래, 보험, 금융 등 사업자의 재정건전성 등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li> </ul> |
| B 등급<br>(중위등급) | 1천 미만<br>3백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시설에 관한 다소 경미한 사건·사고로서 법률상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신고의무</li> <li>■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과 같이 해당 자료나 보고가 후속적인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li> <li>■ 조합원 등 구성원의 보호나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li> </ul>                                                      |
| C 등급<br>(하위등급) | 3백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대상자에 대한 구호가 필요한 사건 등의 신고로서 법률상 책임이 없거나 약한 자의 신고의무</li> <li>■ 별도의 행정적 조치가 불필요한 확인적 차원의 결과보고, 정보 제공이나 관리·감독 차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li> </ul>                                                                                                         |

(자료: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 중 발췌)

참고 입법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폐지 신고나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나 재개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등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제29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등<sup>11)</sup>).

그 밖에, 개정안은 부칙에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sup>12)</sup>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20.10.20., 2023.1.3., 2024.1.30.>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2) 「형법」

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sup>13)</sup>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sup>14)</sup>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51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895-896면